

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

1. 관련기사

- 2.10.(토) 세계일보(인터넷), “노사문화 우수기업’라면서 노동법 위반... 3년간 53건” 기사 관련

2. 설명내용

-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, 노사문화 실천요소,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
 - 결격사유*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, 선정 이후에도 중대한 법 위반** 발생 시 취소·철회하고 있으며,
 - * 노사분규 발생, 산재명단 공표, 임금체불 명단공표
 - ** 중대재해 또는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불로 기소 송치,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 10건 이상
 - 다만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을 정하여 실제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
- 2021~2023년도 우수기업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25개소로, 1개소*를 제외하고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, 시정이 완료되어 취소·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
* 현대백화점(21년도 선정) : 중대재해로 기소 송치되어 우수기업 우대조치 철회

- 기사에 인용된 사업장*의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미만이고, 대부분 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었으나, 소액 금품에 해당되거나 법 해석의 다름으로 발생한 것으로, 모두 시정 완료 또는 취하로 행정종결됨

* (주)휴넥트(8건), 신세계푸드(4건), 인천시설공단(6건), 한국가스기술공사(3건), 한국

전력기술(2건), 스마일게이트홀딩스(2건)

* 인천시설공단인 경우 선정 이후 직상급자의 폭행 1건이 기소 송치되었으나, 철회 사유에 미해당

□ 향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,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

<참고1> **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대상 제외 기준**

- ▲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▲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▲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 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
<참고2> **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 사유**

- ▲ 선정되기 이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▲ 선정 이후의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<참고3> **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이후 철회 사유**

- ▲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▲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의해 체불사업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▲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▲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▲ 부당노동행위 또는 고액임금 체불(10억원 이상)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
- ▲ 사회적 물의 발생으로 감독실시 결과, 노동관계법 10건 이상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순재 (044-202-7587)
		담당자	사무관	오경화 (044-202-7591)